곤명면 공고 제2024-12호

2024년도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자격기준 및 신청 공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2024년도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6.

곤 명 면 장

1. 관련근거

가. 「낙동강수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나.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제5조

2. 2024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자격기준

가. **수변구역 지정(2006.12.29.)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①항, ②항 모두 충족)

① 「낙동강수계법」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을 소유하고,

②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하 "원대상자")

※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천시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포함(1회로 한정)

나. **수변구역 지정(2006.12.29.) 전부터** 원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사천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천시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포함(1회로 한정)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5. 3.(금)까지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라 2024. 1. 31. 기준으로 2024년도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확정할 예정이며, **재산규모 산정 후 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접 수 처 : 곤명면행정복지센터

※ 사업비는 대상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한 세대에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

다. 신청서류

①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 1부.(붙임1)

② 주민등록등(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자는 제외)

③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자는 제외)

④ 토지대장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자는 제외)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 시)

⑥ 건축물대장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자는 제외)

4. 문 의 처 : 곤명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5-831-5207)

[붙임 1]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

(앞쪽)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2">접수일</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3">연락처</td></tr>
<tr><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전입일</td></tr>
<tr><td colspan="5">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td></tr>
<tr><td rowspan="4">실거주</td><td>지역구분</td><td colspan="4">수변구역</td></tr>
<tr><td>확인방법</td><td colspan="4">☐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td></tr>
<tr><td rowspan="2">확인자</td><td colspan="2">☐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td><td>확인일</td><td>.　.</td></tr>
<tr><td>☐ 성명</td><td></td><td>☐ 연락처</td><td></td></tr>
<tr><td>대상자 선정 구분</td><td colspan="5">☐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td></tr>
<tr><td rowspan="2">(전용카드) 지급계좌</td><td>금융기관명</td><td colspan="2"></td><td rowspan="2">예금주</td><td rowspan="2"></td></tr>
<tr><td>계좌번호</td><td colspan="2"></td></tr>
</table>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202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일에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 반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 6.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

(뒤쪽)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대상구분	읍·면	리	지번	면적 (㎡)	비고
수변구역					
수변구역					
수변구역					
수변구역					
수변구역					
수변구역					
수변구역					
수변구역					

유의사항

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동의 ( ) 부동의 ( )
토지등기부 등본	동의 ( ) 부동의 ( )
건축물 등기부 등본	동의 ( ) 부동의 ( )
토지(임야) 대장	동의 ( ) 부동의 ( )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